

의안번호	2201106
의 퇴 인	정혜경 의원
회 답 일	2024.7.25.
추 계 번호	24B14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안전보건진단)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됨. 이 경우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참석시켜야 함(제4항)	의무규정
5	안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항)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요양 후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복귀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중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 또는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의무규정
6	안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8	안 제138조의 2(요양 종료 근로자에 대한 조치) 신설	사업주는 제138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마친 근로자의 경우 장애 정도, 사업장의 상황, 해당 근로자의 의사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무로 전환배치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전환 배치한 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이 산업재해 발생 이전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41조(역학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하여야 함 3.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함. 이하 “요양급여 신청자 등”이라 한다)	재량규정
10	안 제1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5항)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7조(안전보건진단)	• 미대상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 시키도록 하는 내용임 -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미대상 - 개정안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4	안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미대상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를 참석 시키도록 하는 내용임 - 작업환경측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미대상 -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은 사업주의 의무로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이 수반되지 않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감소하므로 별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음
6	안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미대상 -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7	안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미대상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에 따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8	안 제138조의2(요양 종료 근로자에 대한 조치) 신설	• 미대상 - 사업주의 인사노무 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추가재정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대상 - 사업주의 인사노무 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추가재정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본문 참조)
9	안 제141조(역학조사)	• 미대상 - 개정안은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에 당사자 및 관계자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임 - 향후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참석수당 등이 지급될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개정조항은 당사자 및 관계자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당 등의 지급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안 제175조(과태료)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에 따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요양을 사유로 하는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고(안 제13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요양 종료 후 업무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안 제138조의2 신설)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추진할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